

구분	당초			변경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기타	토지	18	70,261.9	90,446,620				18	70,261.9	90,446,620	
	3. 취득	건물										
처분	계	토지	18	125,270.8	95,907,208				18	125,270.8	95,907,208	
		건물	2	4,661.4	651,290				2	4,661.4	651,290	
양여	4. 매각	토지	12	118,055.2	87,929,404				12	118,055.2	87,929,404	
		건물	2	4,661.4	651,290				2	4,661.4	651,290	
교환	5. 양여	토지										
		건물										
처분	6. 처분	토지	6	7,215.6	7,977,804				6	7,215.6	7,977,804	
		건물										

(※ 취득대상 재산목록 수록생략)

7.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鄭水華議員 外 39人 發議)
(17時 25分)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동 條例案은 지난 11월 15일 鄭水華議員의 39名이 議長에게 제출하여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鄭水華委員님께서 동 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水華委員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財産권을 보호하고 시민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7條에서 규정한 公有財産 개량시의 가격평정 등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사항이 없어서 이를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에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公有財産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하거나 기타 正當한 사유,(서울特別市와 지방자치구 및 事業所 등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이주된 자를 포함하여) 이런 正當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財産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에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의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격이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격 이상으로 매각 대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 조립, 부속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기타 당해 財産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간 후 토지에 대한 매각 가격의 1/10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그 비용은 개간후 토지가격에서 개간전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이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37조의2에서 심사 결정된 개량비의 지급은 개량한 자가 서울特別市長에게 신청하면 서울特別市長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예산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地方財政法施行令이 83년부터 개정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신청한 사례도 없고, 서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주지시킨 바가 없어서 시민들은 이런 개량비에 관한 공제되는